

'18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조정 결과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령(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18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기재부·행안부와 협의·확정한 결과보고임

- **산림청 소관 품목 34개중 19개를 전년 대비 평균 63% 인상, '19년 고시까지 적용**

* 취나물 172%, 야생화 122, 산양삼 114, 도라지 109, 더덕 103, 머루·다래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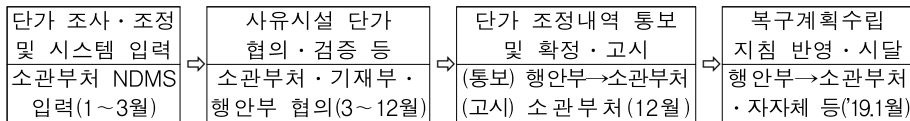
- **최근 5년('13~'17년) 대비, 인상품목·비율 최대로 확대·증가**

* ('13년) 8품목/26% → ('14년) 11/44→ ('15년) 11/27→ ('16년) 10/28→ ('17년) 13/54

□ 추진근거 및 절차

○ (추진근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4조

○ (추진절차) 산정기준(단가)은 기재부·행안부와 협의하여 고시



*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자연재난 발생 현황 입력·관리, 복구비 지원, 재해통계 관리 등을 위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시스템

* 소관부처(5개 부처) : 행안부,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 그간의 추진사항

○ 임산물, 시설물의 실거래가, 시공비 등 조사(지자체 등) : 1~2월

○ 재난복구 지원체계 개선 협의체(TF) 3차 회의 : 1.31

* 행안부 6, 교육부 1, 복지부 2, 농림부 1, 중기부 1, 산림청, 1, 경북도 2, 포항시 2 등 19명 참석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내역 제출(산림청→행안부) : 2.19

○ '18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조정 협의자료 추가 제출 : 4.18

○ '18년 자연재난 복구단가 현실화 회의 행안부, 농림부 협의 : 5.29 외

□ 산정기준(단가) 조정 결과

○ 산림청 소관 지원품목 34개중 19개에 대해 평균 전년 대비 62.9% 인상

- 취나물 172%, 야생화 122, 산양삼 114, 도라지 109, 더덕 103, 머루·다래 82

- 최근 5년('13~'17년) 대비, 인상품목·비율 최대로 확대·증가

* ('13년) 8품목/26% → ('14년) 11/44→ ('15년) 11/27→ ('16년) 10/28→ ('17년) 13/54

(단위 : 원)

일련 번호	품 목	단위	'17년 단가 (A)	'18년 단가 (B)	증가액 (C=B-A)	(%)
	평균			19개 품목		62.9
	o 산림작물(8개 품목)					66.5
1	-잔디(과중생산비)	ha	9,610,000	14,590,000	4,980,000	51.8
2	-조경수(묘목기준)	ha	48,270,000	58,060,000	9,790,000	20.3
3	-분재(묘목기준)	ha	48,270,000	58,060,000	9,790,000	20.3
4	-호두(묘목기준)	ha	2,691,269	3,220,000	528,731	19.6
5	-은행(묘목기준)	ha	2,336,600	2,840,000	503,400	21.5
6	-야생화(종자대, 비료대)	ha	4,020,000	8,940,000	4,920,000	122.4
7	-약용류*(묘목기준)	ha	13,070,000	15,050,000	1,980,000	15.1
8	-머루(묘목기준)	ha	9,630,000	17,500,000	7,870,000	81.7
9	-다래(묘목기준)	ha	8,570,000	15,600,000	7,030,000	82.0
10	-도라지(종자대)	ha	4,810,000	10,030,000	5,220,000	108.5
11	-더덕(종자대)	ha	5,210,000	10,580,000	5,370,000	103.1
12	-두릅(종자대)	ha	12,710,000	18,470,000	5,760,000	45.3
13	-취나물(종자대)	ha	2,540,000	6,900,000	4,360,000	171.7
14	-산양삼(종자대)	ha	15,610,000	33,370,000	17,760,000	113.8
15	-약초류*(종자대)	ha	7,850,000	9,390,000	1,540,000	19.6
	o 농약대(4개 품목)					49.4
16	-병해충방제(산채류)	ha	595,826	760,000	164,174	27.6
17	-병해충방제(수실류)	ha	846,385	1,100,000	253,615	30.0
18	-병해충방제(산양삼·약초류)	ha	357,784	780,000	422,216	118.0
19	-병해충방제(약용류)	ha	697,004	850,000	152,996	22.0

* 약초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율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등

* 약용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삭, 시호, 작약, 천마,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등

* 단가가 인상된 19개 품목의 적용기준은 우리 청 요구액(시장가 등)의 80% 수준으로 적용

□ 산정기준(단가) 조정 기준

- 임산물재해보험 대상 시설물* 및 산림작물**를 제외한 품목의 대과대·농약대를 실거래가 대비 80%(기존 30~70%) 수준으로 인상

* (8개 품목) 표고재배사(표준모델·톱밥배지표고양묘, 2개), 대추비가림(5개), 임업시설 철거비

** (6개 품목) 표고자목, 밤, 대추, 뽕은감, 복분자, 표고톱밥배지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자연재해 피해 임가에 인상된 단가로 복구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임업인의 재해복구 부담완화 및 예산지원 증가효과 발생

* 금년 단가가 인상된 19개 품목은 재해피해 임가에 62.9% 늘어난 복구비 지원 가능

- (향후계획) 복구단가 조정 결과 관보게재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알림('18.12.26), 피해복구 지원에 변경단가 적용('19년 단가고시 전까지)

- '19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자료 조사('19.2월까지)

* 조사대상 : 임업시설(8품목)·산림작물(21품목)·농약대(5종), 신규품목 등

참고 1 2017년 산림청 소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사유시설)

품 목(34개)	단위	'16년 단가 (C)	'17년 단가 (C)	'18년 단가 (C)	인상액 (D=C-B)	(%)	비고
○ 산림시설(7개 품목)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ha	270,080,000	270,080,000	270,080,000	-	-	
-표고재배사(톱밥배지 표고양묘)	ha	449,310,000	449,310,000	449,310,000	-	-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ha	66,050,000	66,050,000	66,050,000	-	-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ha	68,270,000	68,270,000	68,270,000	-	-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ha	88,990,000	88,990,000	88,990,000	-	-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ha	97,380,000	97,380,000	97,380,000	-	-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ha	101,620,000	101,620,000	101,620,000	-	-	
○ 임업시설 철거비(필요할 경우)	지수	재난지수의 10%	재난지수의 10%	재난지수의 10%	-	-	
○ 산림작물(21개 품목)							
-표고자목(1.2m)	본	3,139	3,139	3,139	-	-	
-잔디(과종생산비)	ha	6,270,000	9,610,000	14,590,000	4,980,000	51.8	인상
-조경수(묘목기준)	ha	33,150,000	48,270,000	58,060,000	9,790,000	20.3	인상
-분재(묘목기준)	ha	33,150,000	48,270,000	58,060,000	9,790,000	20.3	인상
-밤(묘목기준)	ha	1,067,000	1,067,000	1,067,000	-	-	
-대추(묘목기준)	ha	1,986,800	1,986,800	1,986,800	-	-	
-뽕은감(묘목기준)	ha	1,745,200	1,745,200	1,745,200	-	-	
-호두(묘목기준)	ha	1,788,215	2,691,269	3,220,000	528,731	19.6	인상
-은행(묘목기준)	ha	1,609,500	2,336,600	2,840,000	503,400	21.5	인상
-야생화(종자대·비료대)	ha	4,020,000	4,020,000	8,940,000	4,920,000	122.4	인상
-약용류(묘목기준)	ha	8,760,000	13,070,000	15,050,000	1,980,000	15.1	인상
-복분자(묘목기준)	ha	6,550,000	6,550,000	6,550,000	-	-	
-머루(묘목기준)	ha	9,630,000	9,630,000	17,500,000	7,870,000	81.7	인상
-다래(묘목기준)	ha	8,570,000	8,570,000	15,600,000	7,030,000	82.0	인상
-도라지(종자대)	ha	4,810,000	4,810,000	10,030,000	5,220,000	108.5	인상
-더덕(종자대)	ha	5,210,000	5,210,000	10,580,000	5,370,000	103.1	인상
-두릅(종자대)	ha	8,480,000	12,710,000	18,470,000	5,760,000	45.3	인상
-취나물(종자대)	ha	2,540,000	2,540,000	6,900,000	4,360,000	171.7	인상
-산양삼(종자대)	ha	15,610,000	15,610,000	33,370,000	17,760,000	113.8	인상
-약초류(종자대)	ha	3,400,000	7,850,000	9,390,000	1,540,000	19.6	인상
-표고톱밥배지(종근대)	ha	191,030,000	191,030,000	191,030,000	-	-	
○ 농약대(5개 품목)							
-병해충방제(산채류)	ha	302,145	595,826	760,000	164,174	27.6	인상
-병해충방제(수실류)	ha	626,362	846,385	1,100,000	253,615	30.0	인상
-병해충방제(산양삼·약초류)	ha	235,265	357,784	780,000	422,216	118.0	인상
-병해충방제(약용류)	ha	566,218	697,004	850,000	152,996	22.0	인상
-병해충방제(야생화)	ha	2,570,597	3,288,180	3,288,180	0	0.0	

참고 2 '17년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별 생산액 순위 및 임가수

순위	품 목	생산액(억원)	생산량	단 위	임가수(가구)
1	조경수	6,204	65,261	천본	9,070
2	뽕은감	2,194	212,717	톤	26,288
3	표고버섯	2,119	23,984	"	4,512
4	마	1,910	10,878	"	3,250
5	복분자딸기	1,721	6,492	"	4,584
6	오미자	1,362	10,078	"	6,068
7	더덕	1,315	8,260	"	3,545
8	도라지	1,148	6,604	"	5,147
9	밤	1,050	49,883	"	8,733
10	대 추	809	11,451	"	6,589
11	고사리	682	9,553	"	9,344
12	갯	640	4,205	"	185
13	잔디	581	6,003	평	5,086
14	천마	415	485	톤	853
15	야생화	398	43,433	"	949
16	산양삼	379	121	"	804
17	취나물	362	7,306	"	3,379
18	당귀	309	2,105	"	1,906
19	수액	277	9,550	리터	1,395
20	천궁	259	1,297	톤	391
21	송이	254	134	"	1,596
22	곤드레	206	5,215	"	1,844
23	오갈피	199	765	"	1,217
24	독활	197	1,305	"	798
25	두릅	168	1,435	"	3,849
26	호두	165	1,124	"	2,050
27	구기자	160	283	"	471
28	작약	156	933	"	1,430
29	산딸기	136	1,341	"	7,022
30	감초	102	345	"	-
31	분재	83	1,453	천본	2,928
31	은행	76	1,642	톤	585
33	산마늘	75	433	"	-
34	참나물	74	2,308	"	-
35	산수유	70	275	"	884

* '17년 임산물 총생산액 : 8조 9,652억원, 단기 소득임산물 : 2조 9,136억원

참고 3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8. 2., 시행 2019. 1. 1>

종류(8종)	품 목 명(79개 및 그 밖의 임산물)
수실류(14개)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삼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 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율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